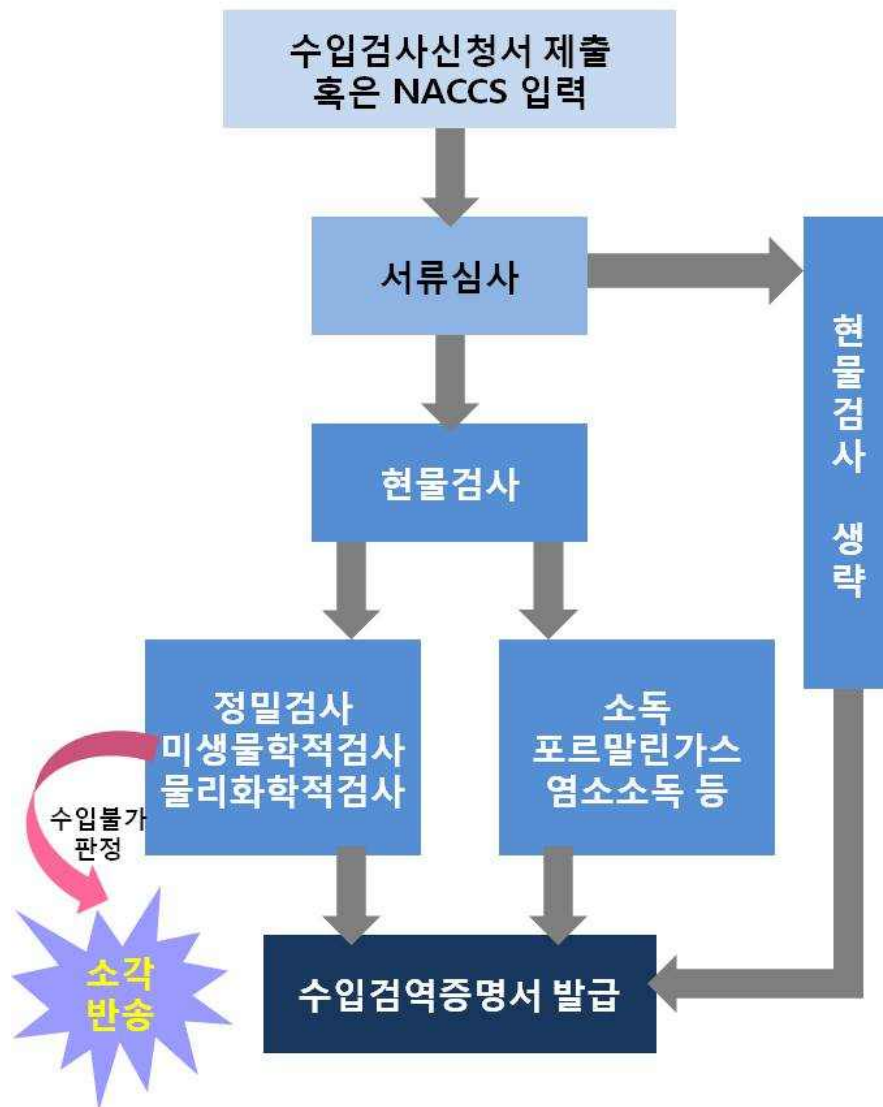


일본 축산물 수입검사 절차



☐ 신청서의 제출 또는 NACCS(동물검역관련업무) 입력

- 수출입자(또는 대리인)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거나, NACCS(동물검역관련업무)를 이용해 신청

☐ 서류심사

- 가축방역관이 서류를 심사하며, 검사신청서의 기재사항, 필요서류의 제출 여부 및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시를 행함

□ 현물검사, 정밀검사

- 가축방역관은 신청서류에 근거, 도착한 화물이 가축방역 상 안전한지에 관해 현물검사를 실시. 또, 필요한 경우 미생물학적, 물리화학적 등의 정밀 검사를 실시
- 가축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수입된 축산물 중 일부에 관해, 서류 등 심사결과에 문제가 없는 경우 현물검사 생략 가능

□ 소독

- 가축방역관은 현물검사 결과, 감시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, 소독 등을 행할 것을 지시
- 소독은 동물검역소가 행하는 “소독강습”을 수료한 자가 행함

□ 소각

- 현물검사 결과, 수입 불가 품목으로 판단되는 경우, 소각 등의 조치 강구

□ 검사종료, 검역증명서의 교부

- 가축방역관에 의해 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, 감시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, 검역증명서가 교부됨

※ NACCS(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)란?

- 동물검역에 필요한 수입사전신고 및 수출입신청수속을 인터넷으로 이용 가능한 시스템(전자신청)

※ 출처 : 일본 동물검역소(動物檢疫所)